

파주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50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9. 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‘99년도 준공된 파주시 여성회관의 시설관리업무와 도라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의 관리·운영 업무등 단순 시설관리업무에 대해 정부의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가. 여성회관의 전기, 난방, 청소, 경비등 시설관리부문을 민간에 위탁

나. 도라전망대의 망원경 및 동전교환기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

다. 수탁기관은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

라. 위탁방법은 위·수탁자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

여성회관 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계획

□ 시설현황

○ 위 치 : 파주시 금촌동 952-4, 952-5

○ 규 모 : 부 지 면 적 : 4,081㎡(건축연면적 : 4,137㎡)

○ 주요시설물 : 지하 1층 : 건강교실(에절실), 샤워실, 탈의실, 알뜰교환실,
도배실, 양재실, 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등

지상 1층 : 전시실, 여협실, 사무실, 미용실, 청소년 상담실,
유아실, 시립 어린이집

지상 2층 : 교양강의실, 컴퓨터실, 어학실, 상담실, 제과제빵실,
매점, 식당, 요리실

지상 3층 : 음악감상실, 스텐실, 취미문화교실, 대강당

□ 위탁사무의 범위

○ 전기, 난방(기계), 청소, 경비 등 단순 시설관리업무

□ 위탁기간

○ 3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

□ 수탁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

- 수탁업체의 기구 및 인력, 재정부담능력, 기술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

□ 민간위탁 방법

-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(협약서안 : 별첨)

□ 여성회관 시설관리 소요예산(년간)

구 분	금 액 (단위 : 천원)	산 출 근 거	비 고
총 계	95,159		
인건비			
난방 (7급 11호봉)	22,308	년간 22,308,000 × 1명 = 22,308,00	기본급+ 각종수당
전기 (7급 11호봉)	22,308	년간 22,308,000 × 1명 = 22,308,000	기본급+ 각종수당
조무 (7급 11호봉)	22,308	년간 22,308,000 × 1명 = 22,308,000	기본급+ 각종수당
청원경찰(8급7호봉)	17,616	년간 17,616,000 × 1명 = 17,616,000	
청소부 (일용인부)	10,619	기본급 18,080 × 26일 × 12월 × 1명 = 5,640,960 주휴수당 18,080 × 4일 × 12월 × 1명 = 867,840 휴일수당 27,120 × 1 × 24 = 650,880 월차유급수당 18,080 × 1 × 12월 = 216,960 년차유급수당 18,080 × 1 × 10월 = 180,800 시간외수당 1,695 × 1 × 20 × 12월 = 406,800 상여금 7,964,240 × 4/12 = 2,654,746	

□ 시 직영/민간위탁과의 예상분석

- 전 제 :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
- 소요인력 : 3 명 감축

시 직 영	구 분	민 간 위 탁
5 명	계	2 명
1	난 방 직 렬	1
1	전 기 직 렬	
1	조 무	
1	청 원 경 찰	1
1	청 소 인 부	

- 예산절감(년간)

(단위 : 천원)

시 직영시	민간위탁시	절 감
95,159	39,924	55,235

□ 기 대 효 과

- 가.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·장비의 효율성 제고
- 나. 시설관리업무를 기존 인력으로 충당함으로써 인건비등 예산절감

파주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위·수탁 협약서

파주시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수탁자 ○ ○ ○ 는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파주시 여성회관 시설 관리업무를 위·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

제1조(협약목적) 이 협약은 위탁시설을 효율적,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“갑”이 위탁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위탁시설의 범위) ① 위탁시설의 범위는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인계한 시설 그 부대시설물 및 비품을 포함한다

② 위탁기간 중 위탁시설 내 “갑”이 신설한 시설도 “을”에게 인계하여 위탁 관리한다

제3조(위탁기간 및 협약변경) ① 위·수탁 운영 개시일은 1999년 월 일로 한다

② 위·수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인계·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한다

③ 협약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변경한다

제4조(위탁관리비) ①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은 “갑”과 “을” 협의하여 연액으로 결정한다.

② 위탁관리비는 “을”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말한다

③ 위탁관리비는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원한다

제5조(재위탁의 금지) “을”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서면으로 “갑”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

제6조(관계법령 준수) “을”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

제7조(업무의 적정관리) ① “을”은 수탁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 등 수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수탁시설에 대하여는 “갑”의 승인없이 신, 증, 개축과 폐기, 용도변경등 이용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

제8조(시설설비 등의 사용 및 인계) ① “갑”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, 설비 등을 “을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. 단,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시설, 설비,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“갑”에게 인도한다

② 무상 제공할 재산 및 설비, 비품 등은 “갑”이 정하여 “을”에게 인계한다

제9조(사고보고) ① “을”은 수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“갑”에게 보고하고 “갑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 수탁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

제10조(협약의 해제) ① “을”이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할 때에는 “갑”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

1. “을”이 “갑”이 위탁한 업무를 수탁하지 않을 때
 2. 관계법령 및 “갑”이 제시한 운영관리 지시 및 기준을 수차례 위반하였을 때
- ② “갑”은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경우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갑”은 이 협약을 해제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- ③ “을”은 “갑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1조(관계법령의 적용)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
파주시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999 년 월 일

“갑” 파 주 시 장 송 달 용
“을”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도라전망대 망원경 관리·운영 민간위탁계획

□ 시설현황

- 설치일자 : '96. 1. 30.
- 망원경 : 12대
- 자동 동전교환기 : 4대
- 관리인원 : 1명(공공근로자)
- 연간 관리비 : 13,172천원
 - 유지 보수비 1,116천원 연료비 4,316천원 인건비 7,740천원

□ 수입현황

연 도 별	내방객(이용자수)	수 입 액	비 고
'96	225,627명(53,887)	26,943,500원	
'97	326,029명(59,842)	29,921,000원	
'98	280,954명(55,103)	27,437,000원	
'99	152,285명(49,388)	24,694,000원	6월말 현재

※ 1일 평균 망원경 이용자 수 : 약 200명

☐ 위탁사무의 범위

- 망원경, 동전교환기 등 시설물 및 수입금 관리일체

☐ 위탁기간

- 3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

☐ 수탁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

- 수탁업체의 기구 및 인력, 재정부담능력, 기술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

☐ 민간위탁의 효과

- 전문적인 망원경 관리운영으로 세외 수입 증대
 - '98년까지 월평균 2,286천원 → '99년 월평균 4,115천원(약 2배 증가)
- 운영요원의 사명감 부여로 책임관리 및 친절안내 효과 거양

파주시 도라전망대 망원경관리 위·수탁 협약서

파주시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수탁자 ○ ○ ○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파주시 여성회관 시설 관리업무를 위·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협약목적) 이 협약은 위탁시설을 효율적,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“갑”이 위탁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위탁시설의 범위) ① 위탁시설의 범위는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인계한 시설 그 부대시설물 및 비품을 포함한다

② 위탁기간 중 위탁시설 내 “갑”이 신설한 시설도 “을”에게 인계하여 위탁 관리한다

제3조(위탁기간 및 협약변경) ① 위·수탁 운영 개시일은 1999년 월 일로 한다

② 위·수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인계·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한다

③ 협약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변경한다

제4조(위탁관리비) ①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은 “갑”과 “을” 협의하여 연액으로 결정한다.

② 위탁관리비는 “을”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말한다

③ 위탁관리비는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원한다

제5조(수입금관리) “을”은 수탁시설 운영에 대한 수입금 전액을 익일까지 파주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6조(제위탁의 금지) “을”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서면으로 “갑”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

제7조(관계법령 준수) “을”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라전망대 망원경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

제8조(업무의 적정관리) ① “을”은 수탁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 등 수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수탁시설에 대하여는 “갑”의 승인없이 신, 증, 개축과 폐기, 용도변경등 이용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

제9조(시설설비 등의 사용 및 인계) ① “갑”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, 설비 등을 “을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. 단,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시설, 설비,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“갑”에게 인도한다

② 무상 제공할 재산 및 설비, 비품 등은 “갑”이 정하여 “을”에게 인계한다

제10조(협약의 해제) ① “을”이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할 때에는 “갑”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

1. “을”이 “갑”이 위탁한 업무를 수탁하지 않을 때

2. 관계법령 및 “갑”이 제시한 운영관리 지시 및 기준을 수차례 위반하였을 때

② “갑”은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경우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갑”은 이 협약을 해제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
③ “을”은 “갑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1조(관계법령의 적용)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
파주시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999 년 월 일

“갑”	파	주	시	장	송	달	용
“을”	○	○	○	○	○	○	○